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130호

2023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도 창업도약패키지』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내용	트랙1 일반과제	트랙2 협업과제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	○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하여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확대 등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대기업 협업프로그램	•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공동 사업화, 투자, 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지원	-	○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3.5월 ~ '24. 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394개사 내외**(일반과제 294개사, 협업과제 10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아래 자격 중 1개 해당 시)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6년 2월 24일 ~ 2020년 2월 2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패스트트랙 기업)**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3]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신청분야

※ 일반·협업과제 중 1개의 트랙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규모는 신청 경쟁률에 따라 추후 확정

○ **(트랙1 : 일반과제)**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294개사 내외**

○ **(트랙2 : 협업과제)** ①5G, ②친환경, ③금융, ④딥테크, ⑤디지털전환, ⑥스마트야드, ⑦디지털서비스 분야 **총 100개사 내외**

< 참여 대기업 및 협업 세부분야 >

대기업	kt	SK innovation	KB금융그룹	posco	KYOBO	SAMSUNG 삼성중공업	CJ 올리브네트웍스
협업분야 (세부)	5G (AI, 모빌리티, 미디어, 콘텐츠, 클라우드 등)	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저감, 배터리 등)	금융 (핀테크, 인슈어테크, 프롭테크 등)	딥테크 (탄소중립, 바이오, ICT, 모빌리티 등)	디지털전환 (인슈어테크, 문화, 콘텐츠 헬스케어 등)	스마트야드 (로봇, 자동화, 생산시스템, 조선, 해양 등)	디지털서비스 (디지털휴먼, 디지털자산, 디지털솔루션 등)

* 대기업별 협업분야 및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에서 확인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13개) 현황 >

(주관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주관기관명	지역	트랙1 일반과제	트랙2 협업과제
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	-
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	○	○ (삼성중공업)
3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대구	○	○ (KT)
4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	○	-
5	부천산업진흥원	경기	○	○ (CJ올리브네트웍스)
6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	○	-
7	울산경제진흥원	울산	○	○ (SK이노베이션)
8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	-
9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연구원)	경북	○	○ (포스코)
10	한국기술벤처재단	서울	○	○ (KB금융그룹)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	○	○ (교보생명그룹)
1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	-
13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	-

* 주관기관별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6.19.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응자금(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3.5월 ~ '24.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대기업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사업화
자금</td><td>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평균 1.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table>
<tr><th rowspan="2">정부지원금</th><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tr>
<tr><th>현금</th><th>현물</th></tr>
<tr><td>총 사업비의 70% 이하</td><td>총 사업비의 10% 이상</td><td>총 사업비의 20% 이하</td></tr>
</table>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1.5억원의 경우) >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정부지원금</th><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tr>
<tr><th>현금</th><th>현물</th></tr>
<tr><td>215백만원</td><td>150백만원</td><td>22백만원</td><td>43백만원</td></tr>
<tr><td>100%</td><td>69.8%</td><td>10.2%</td><td>20.0%</td></tr>
</table>
</td></tr>
<tr><td>창업
프로그램</td><td>
•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확대 지원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후속투자 유치</td><td>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td></tr>
<tr><td>글로벌시장 확대</td><td>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td></tr>
</table>
• (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td></tr>
<tr><td>대기업
협업
프로그램</td><td>
• 대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투자, 데이터·장비, 대기업-창업기업 간 공동사업화 등을 지원
</td></tr>
</table>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대기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 대기업 소개자료 참고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3. 2.23.(목) ~ 3. 20.(월), 16:00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과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③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 K-Startup에서 직접 선택하여 접수한 주관기관과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2] 양식)

-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일반과제 - 별첨 1, 대기업 협업과제 - 별첨 2)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제외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서류는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사업계획서에 증빙서류 포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해당시) 공동·각자대표 동의서, 가점 등 증빙서류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후 최종 공고
'23.3월 중	~'23.3월 말	~'23.4월 중	'23.4월 말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구분	대상	점수	비고
가점	• **최근 1년 이내 5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1점	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등
서류평가 면제*	• **도전! K-스타트업 2022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02호, '22.1.28.)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전담기관이 해당기업에 별도 안내
우선선정	• **도전! K-스타트업 2022 통합본선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02호, '22.1.28.)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서류평가 면제, 우선선정 대상일지라도, '23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③ **발표평가** : **발표평가 결과**(90%)에 **중소기업일자리평가**(10%, [붙임 4] 참고)를 **합산**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는 동일하게 시행 예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시 해당란 체크 必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3. 2. 23.(목)		'23. 2. 23.(목) ~ 3. 20.(월), 16시까지		~ '23. 4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준비 (대응자금 입금 등)	⇦	선정 공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23. 5월 중 ~		'23. 5월 초(별도안내)		'23. 4월 말

⇩

사업수행	⇨	수시점검 (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3. 5월 ~ '24. 2월(10개월)		수시		~'24. 3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3. 3. 3.(금) 13:30, 서울 TIPS타운 S1, B1층 팁스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대중교통 이용 요망, 해당건물 주차 불가**

○ **(참가방법)** 온라인 설문폼을 통한 사전등록(선착순 마감)

* 사전등록 URL : https://event-us.kr/StartupScaleUp23/event/57922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일반과제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주관기관명 가나다순)

No	주관기관명	지역	연락처	사업설명회 일정(주소)
1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경기	031-780-9084~5	'23.3.8.(수) 14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 대회의실 (경기 성남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2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경남	055-291-9345, 9357, 9306	'23.3.9.(목) 10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611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대구	053-939-6195~6	'23.3.8.(수) 14시~ 경북대학교 IT 융합산업빌딩 2층 대회의실 (대구 북구 대학로 80)
4	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광주	062-610-9512, 9516	'23.3.9.(목) 14시~ 전일빌딩 245, 9층 (광주 동구 금남로245)
5	부천산업진흥원	경기	032-716-6510~7	'23.3.7.(화) 15시~ 부천 IOT 혁신센터 GRound21 (경기 부천 조마무로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21층)
6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	043-299-8690~4	'23.3.2.(목) 16시~ 충북창업스타티움 (충북 청주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2층)
7	울산경제진흥원	울산	052-710-5903	'23.3.8.(수) 15시~ 울산경제진흥원 5층 대회의실 (울산 북구 산업로 915)
8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032-260-0952~5	'23.3.9.(목) 14시~ 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20층 미추홀관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미추홀타워)
9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연구원)	경북	054-279-5621~4	'23.3.8.(수) 15시~ 포항공대 포스코국제관 2층 중회의실 (경북 포항 남구 청암로 77)
10	한국기술벤처재단	서울	02-958-6607, 6692	'23.3.13.(월) 14시~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3 2층 상사전시장 A01 스타트업 브랜치)

No	주관기관명	지역	연락처	사업설명회 일정(주소)	
11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서울	02-2095-1743, 1728	'23.3.8.(수) 1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서울 중구 칠패로36 봉래빌딩 3층)	
1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042-629-2547, 2539	1회차	'23.3.6.(월) 14시~ K-Water 한강유역본부 1층 대회의실 (경기 과천 교육원로 11)
				2회차	'23.3.7.(화) 14시~ K-Water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13	한국탄소 산업진흥원	전북	063-219-3674~8	'23.3.9.(목) 14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 대강당 (전북 전주 덕진구 원만성로 106)	

*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협업과제 문의)** 대기업 및 주관기관 담당자

* 대기업 문의 : 창업기업과 **대기업의 협업(공동사업화 등) 관련 문의에 한함**

(주관기관명 가나다순)

No	대기업명	연락처	주관기관명	연락처
1	삼성중공업	055-630-869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45, 9357, 9306
2	KT	jisoo.bae@kt.com yonghun.jun@kt.com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053-939-6195~6
3	CJ올리브네트웍스	02-6252-0969	부천산업진흥원	032-716-6510~7
4	SK이노베이션	ju1212@sk.com jeongwon_jang@sk.com	울산경제진흥원	052-710-5903, 7223
5	포스코	054-221-6521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연구원)	054-279-5621~4
6	KB금융지주	02-2073-6248 02-6073-6114	한국기술벤처재단	02-958-6607, 6692
7	교보생명그룹	02-721-3854 02-721-370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2095-1743, 1728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3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요건
초기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포함)	참여기업 (중단·포기·실패 기업 제외)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재도전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포함)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구분	세부 자격요건	증빙서류
①~③ 중 기본 1개	①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 증빙자료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②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③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 **단, 참여기업의 대표자, 기업명, 아이템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2년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중단·포기·실패 시 최종선정 제외	
①~③ 중 필수 1개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②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22년 결산 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 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등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붙임 4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을 정부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도입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발표평가 총점의 10%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별도 제출서류 불필요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

창업기업	→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SIMS)	→	전담·주관기관
사업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3.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Ⅰ.일자리 양'은 '21년 결산 대비 '22년 결산 기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Ⅱ.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Ⅲ.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20	
Ⅳ.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5) 파.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 100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성과급 지급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임금수준 상승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해당연도 펴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88-6259), https://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88-6259),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448)
가족친화인증	■ (개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2),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070-4566-5100),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61),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052-703-0598),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044-204-7448) 대한상공회의소 회원협력팀(02-6050-3881) 복지플랫폼 콜센터(1588-1600)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25)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 (개요) 벤처·스타트업의 SW개발자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부처 협업 기반 'SW 인력양성 트랙*' 신설 ■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일자리사업팀(02-6331-7040)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	■ (개요) ESG 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ESG경영 전환 촉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사업처(055-751-9771)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부(02-368-8428)